第25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國 會 事 務 處

2005年7月6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제2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
3.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인사청문경과보고
4.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7.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8.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

附議된案件

1. 제2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1
2.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의장 제의) …… 1
3.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인사청문경과보고 …… 3
4.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4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4
6.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4
7.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4
8.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 8

(14시23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제2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7월 6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의장 제의)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대현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조대현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지난 6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했으며, 오늘 의석에 추가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憲法裁判所裁判官(曺大鉉)選出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長 金映宣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 선출안에 대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현안에 대한 식견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7월 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은 다음,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우성기 동국대 교수, 박성호 YTN 국제부 부장,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및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 총 5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부터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신변에 관하여는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 관계 및 개인의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개인적 성향과 법적·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자 등에 대한 관심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나 당부에 대하여는 과거 판사로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겠노라고 진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의 제1의 추천 사유였던 후보자의 개혁성에 대하여는 법원노조의 입장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하여 개혁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판사로서 20여 년간 재직하였고 최근 변호사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사건의 소송대리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실제 대리인으로 활동했는가 하는 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점 등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담보와 관련된 우려와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의 형평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5인의 참고인 중 강보현·곽배희 참고인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도덕성을 갖추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기타 일부 참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임명되는 것이 좋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심사경과 내용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선출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이종걸 의원, 정장선 의원, 조일현 의원, 김양수 의원, 김영덕 의원, 정두언 의원, 노회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34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5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5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5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가 14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인사청문경과 보고

(15시0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장대리 정형근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 정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대통령으로부터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지난 2003년 4월 22일 실시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인사청문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은 요즈음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국가안보적 과제를 담당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굳게 지키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최근의 국내외 상황을 볼 때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국정 수행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7월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참고인 4명을 출석시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산 형성 경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 개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정원의 개혁 방향, 과거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국정원 인사 문제, 내부기강 문제, NSC와 국정원의 관계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세 번째로 후보자의 사상 및 이

념에 관하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사항,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 및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과거 공직 재직 시 정보 및 공안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많지 않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내외 안보환경 속에서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보수적인 시각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니고 있고,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후보자의 업무 수행 의지 및 소신을 평가하여 향후 국가정보원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서 무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6.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5시1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장 이윤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입니다.

개혁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특히 국회 개혁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심의 의결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마감 시간에 쫓겨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5일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운영·제도 개선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70건의 국회 관계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요 논의 과제 가운데 40개의 과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이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본 과제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문제, 기획예산처의 소관 위원회 이관 문제,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 연중 상시 개원 문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문제,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개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 문제,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문제 등 중요한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나 최종 단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논의 과제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위 내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협의체와 국회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소위를 두도록 건의한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절차와 국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의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 소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전원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및 발언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여섯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대정부 관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처리시한을 명시했습니다.

셋째,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의 발의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별도의 추가질문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 심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결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법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둘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에 첨부서류인 소득세 등의 납부실적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늘리고, 여기에 체납실적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국회개혁특별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1년간 계속 활동해 온 위원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6명

뿐이었습니다. 1년간 14명의 위원이 바뀔 만큼 위원의 교체도 잦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본 특위는 4개의 법률안을 위원장님의 발표대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두 20여 개 항의 주요 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의 의무화,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폐지, 의원의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미 있는 개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의무화 요구는 이미 14대 국회 당시부터 학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어 왔으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개정되는 적잖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정부안과 의원입법 모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반드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반영되어 입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도모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및 발언시간 제한규정도 삭제해서 토의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안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아예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의 근거규정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도 당초 제안되었던 의견은 의원 또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 또는 입법안 개발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개발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하고 감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원비 지급 기준 및 액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집행 절차와 기준은 온전히 무시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수정안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자체 예산 집행에 엄중을 다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혁특위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지극히 당연한 조치들도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오늘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년간 국회개혁특위 위원들이 합의를 도출해 낸 최소한의 개정법안들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부족한 대로 국회개혁을 부분적으로라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국회개혁의 내용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어 놓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수준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던 교섭단체 폐지 내지는 구성요건 완화, 예결위원회의 상임위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등등 국회개혁의 굵직굵직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개혁특위에 회부되었던 수십 건의 법률안과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공청회 당시 4명의 진술인 모두가 한결같이 '대통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내정당과 별도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의 전문가적 견해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작 국회개혁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문제는 소관 소위원회는 물론 전체회

의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17대 국회 구성 당시 의석 수로는 8%에 불과하였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선거 당시 득표율은 23.5%에 달했습니다. 선거법상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게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이중 봉쇄장치를 또다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라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이 유독 우리 국회에서만 과도한 권한과 독점적 협의체의 특성을 과시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설치 목적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해 설치된 교섭단체 제도가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국회 운영을 파행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내 19개의 상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한 심의 권한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양 교섭단체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2+2, 4자회담'이라는 신종 회의체가 가동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지도부 간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무작정 대기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집단 불참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의사 진행이 개혁국회라고 하는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 오히려 제약받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지도부의 정치적인 협상이 사실상 국회 운영에 따르는 의안의 상정 및 처리 과정 등 모든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법 개정에까지 철저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대 정당의 몇몇 지도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수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국회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더 이상 국회 개혁을 담보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 핵심 법안들은 1년이라는 논의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특위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소위 정치적 과제들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 핵심 개혁 법안은 특위에서 위원들이 다룰 과제가 아니라 교섭단체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국회개혁특위가 국회개혁이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담아 출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오로지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 의원의 점유가 60%를 넘어선 17대 국회에서 자체 운영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회 개혁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의 개혁에는 무기력해 왔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겠습니까?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두 교섭단체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거대 정당이 수의 횡포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과도 함께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교섭단체 폐지 내지 구성요건 완화의 건이 양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섭단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섭단체의 월권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회개혁의 핵심적 과제임에도 결국 미합의 사항으로 남게 된 예결위원회의 상임위화 문제,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부족한 대로 절반의 개혁을 단행하는 셈입니다. 남은 절반의 개혁은 이제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2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안상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아마 안상수 의원이 서신으로써 각 방에 전달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5시3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한명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입니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성 의원 등 22인, 권영길 의원 등 20인, 원희룡 의원 등 15인이 각각 제안한 북핵 문제 관련 3건의 결의안과 김효석 의원 등 19인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결의안에 대해서 2005년 6월 27일 제254회 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결의안들은 그 취지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공동 번영 추구에 있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6·15정신’을 새롭게 되살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당국 간 회담을 비롯하여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 관련국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적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한 올해야말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 지향적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중대한 기회라는 점에 주목하며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 차원에서의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의 개최를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하며, 남북 당국이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현실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며,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구체적 여건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남북 당사자 원칙하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6·15 정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당국 간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2000년 이래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구체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화해·협력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9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하루 일정의 제255회 임시국회를 마침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국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17대 국회는 예전에 비할 때 성숙한 국회 운영과 의정 활동의 높아진 생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회상의 정립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의 제252회 임시국회 이후 큰 틀에서 볼 때 상대 당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의 의회주의 원칙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해 차를 좁히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승복하는 풍토가 점차 뿌리 내려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전에 비해서 매우 활성화된 의원 연구모임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이 대폭 증가했고, 국회가 처리한 안건도 괄목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국회가 처리한 안

건은 총 700건이고 또 가결 처리한 안건의 수는 393건으로 제16대 국회 같은 기간인 2001년도 상반기 안건 처리 건수 182건, 가결 건수 139건에 비해서 각각 3.8배 및 2.8배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입법 활동에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이같은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 노력이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직도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왜 그렇게 인색한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다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임기 중에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최소한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는 51%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속 당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우리는 새의 양 날개이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어 앉은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중에 2004년도 결산심사를 완료하셔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소서이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게 됩니다.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재충전도 하시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소중한 시간도 가지신 뒤에 심기일전한 모습으로 정기국회 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4인)

찬성의원(230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열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4인)

김기춘 김정부 노회찬 안상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3인)

찬성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열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 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2인)

정갑윤 한선교

기권의원(2인)

안상수 허태열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34인)

찬성의원(216인)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성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2인)

강기갑 고진화 권영길 김낙성
노회찬 손봉숙 신상진 이상열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현애자

기권의원(6인)

권영세 김종률 박찬숙 심재철
이한구 전재희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투표의원(232인)

찬성의원(228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열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의원(1인)

곽성문

기권의원(3인)

김정부 김형오 이한구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대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01인)

강기갑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흥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열 이성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정일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19인)

고흥길 김기춘 김문수 김애실
김정부 박계동 박성범 박재완
서병수 송영선 유승민 이강두
이재웅 이종구 정갑윤 정종복
최경환 최병국 한선교

○出席議員(257人)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出張議員(20人)

구논회 김우남 김재원 김정훈
김학원 김희정 나경원 노웅래
박명광 박창달 변재일 송영길
안명옥 오영식 우상호 이성권
이주호 이혜훈 정의화 한광원

○請暇議員(15人)

강길부 김학송 김홍일 남경필
단병호 박세환 심재덕 안민석
이방호 이상배 이석현 임종석
정동채 주호영 최순영

【報告事項】

○常任委員 辭任 및 補任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문병호	법제사법	보건복지	열린우리당
선병렬	산업자원	법제사법	
천정배	보건복지	산업자원	

(7월4일)

○特別委員 辭任 및 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특별	홍창선	장복심	열린우리당

(7월6일)

○議案 提出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김충환·김재경·임인배·신상진·맹형규·황우여·이성권·김재원·유기준·유정복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김충환·김재원·유기준·안상수·이혜훈·김재경·이성권·강재섭·박재완·임인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주승용·심재철·김태홍·정장선·이해봉·이재오·안상수·박재완·최재성·오제세·서재관·심재덕·정병국·최인기·류근찬·김종률·신중식·우윤근·이상경·유승희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이영순·강기정·강창일·강혜숙·고진화·권영길·김선미·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계동·박영선·배일도·손봉숙·송영길·신기남·신중식·심상정·안민석·양형일·우상호·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호중·이경숙·이광철·강기갑·이원영·이인영·이재오·이정일·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향숙·정봉주·정성호·정장선·정청래·조승수·주승용·지병문·천영세·최순영·최재성·최재천·현애자·홍미영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이성권·김석준·이계경·김희정·김기현·박승환·김명주·김양수·권철현·남경필·박형준·곽성문·김재경·정희수·박재완·이해봉·엄호성·김충환·정병국·정문헌·안상수·김재원·서혜석·정화원 의원 발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이성권·김석준·이계경·김희정·김기현·박승환·김명주·김양수·권철현·남경필·박형준·곽성문·김재경·이재웅·정희수·박재완·이해봉·엄호성·정병국·김충환·서혜석·정문헌·안상수·김재원·정화원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民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한명숙·강혜숙·강창일·권선택·김기석·김낙순·김영주·김원웅·김재윤·김춘진·김태홍·김현미·김효석·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회찬·박기춘·박영선·박재완·배일도·민병두·서혜석·선병렬·심재덕·안민석·양승조·손봉숙·신기남·신상진·염동연·우상호·유승희·유시민·윤원호·유재건·이계안·이광철·이경숙·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영순·이인기·이인영·이해봉·이화영·이호웅·임종석·장영달·장복심·장향숙·정의용·제종길·조배숙·지병문·최규성·최성·최순영·현애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한명숙·강혜숙·강창일·김기석·김낙순·김영주·김원웅·김재윤·김춘진·김태홍·김현미·김효석·김희선·노영민·노회찬·박기춘·박영선·박재완·배일도·민병두·서혜석·선병렬·신상진·안민석·양승조·손봉숙·신기남·염동연·우상호·유승희·유시민·윤원호·유재건·이계안·이광철·이경숙·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영순·이인기·이인영·이원영·이화영·이호웅·임종석·장영달·장복심·장향숙·정의용·제종길·조배숙·지병문·최규성·최성·최순영·현애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한명숙·강혜숙·강창일·김기석·김낙순·김영주·김원웅·김재윤·김춘진·김태홍·김현미·김효석·김희선·노영민·노회찬·박기춘·박영선·박재완·배일도·민병두·서혜석·선병렬·안민석·양승조·손봉숙·신기남·신상진·염동연·우상호·유승희·유시민·윤원호·유재건·이계안·이광철·이경숙·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영순·이인기·이인영·이화영·이호웅·임종석·장영달·장복심·장향숙·정의용·제종길·조배숙·지병문·최규성·최성·최순영·현애자·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최성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최성·배기선·김성곤·권영길·조승수·김효석·이원영·김형주·최재성·이시종·이영호 의원 발의)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7월1일 이낙연·강혜숙·김낙성·김종인·김홍일·김효석·이상열·이승희·이정일·최인기 의원 발의)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안영근 의원 대표발의)

(7월1일 안영근·김성곤·한광원·박찬석·김부겸·이근식·신학용·김홍일·조정식·김영춘·조성태·유재건 의원 발의)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박종근·강재섭·정종복·이인기·김석준·이성권·곽성문·김태환·임인배·서상기·최병국·이명규·권경석·김성조·정두언·김기현·권오을·박재완·주호영·홍준표·권철현·김정부·안택수·이강두·정문헌·이종구·최경환·정갑윤·박혁규·이상득·이재오·진수희·정의화·김애실·황우여·윤건영·이계진·이병석·박승환·유승민·심재철·나경원·심재엽·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船舶職員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이영호·이상배·신학용·신중식·노영민·노웅래·한광원·최성·이시종·한병도·김정훈·이정일·이상민·김선미·윤원호·김희선·김기현·김재윤·조일현·강창일·김우남 의원 발의)

7월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이영호·이상배·신학용·신중식·노영민·노웅래·한광원·최성·이시종·한병도·김정훈·이정일·이상민·김선미·윤원호·김희선·김기현·김재윤·조일현·강창일·김우남 의원 발의)

7월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6월30일 이영호·이상배·신학용·신중식·노영민·노웅래·한광원·이시종·한병도·최성·김정훈·이정일·이상민·김선미·윤원호·김희선·김기현·김재윤·조일현·강창일·김우남 의원 발의)

7월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 일부규칙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7월1일 이낙연·강혜숙·김낙성·김종인·김홍일·김효석·이상열·이승희·이정일·최인기 의원 발의)

7월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7월4일 박순자·정화원·윤건영·안명옥·이주호·이계진·김기현·박재완·김양수·박세환·정문헌·나경원·유정복·유기준·김충환·서병수·김영선·이규택·이강두·박진·최구식·이명규·이재웅·정종복·김명주·김영숙·이경재·전여옥·진수희·전재희·김덕룡·김애실·이혜훈·공성진·박찬숙·안상수 의원 발의)

7월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7월4일 제종길·이경재·김영주·김형주·단병호·우원식·공성진·이목희·장복심·조정식·김교흥·김덕규·김선미·김우남·김종률·김태홍·노현송·서혜석·엄호성·유승희·이상경 의원 발의)

7월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7월4일 김원웅·박병석·이상민·선병렬·권선택·구논회·류근찬·유승희·김재윤·홍미영 의원 발의)

7월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서병수·김충환·전여옥·안상수·배일도·이인기·이재오·전병헌·엄호성·나경원·고진화·이명규·김양수 의원 발의)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서병수·김충환·전여옥·안상수·배일도·이인기·이재오·전병헌·엄호성·나경원·고진화·이명규·김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박찬숙·이성구·이상경·구논회·박재완·정성호·나경원·황우여·권경석·선병렬 의원 발의)
7월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엄호성·김정부·이한구·정문헌·박재완·이성구·박종근·김애실·이종구·이혜훈·정형근·최경환·김양수·김재원·김무성·이재웅·박승환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2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월6일 의장 제의)
7월6일 (1일간)

○議案 審査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안
(6월23일 의장 제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헌법재판소재판관(조대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승규) 인사청문요청안
(6월24일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보위원장 보고
국회의원(이은영)징계안
(2004년10월11일 이강두 의원 발의)
국회의원(박승환)징계안
(2004년12월10일 유선호 의원 외 150인 발의)
국회의원(주성영)징계안
(2004년12월10일 유선호 의원 외 150인 발의)
국회의원(김기현)징계안
(2004년12월10일 유선호 의원 외 150인 발의)
국회의원(이재오) 징계요구의 건
(3월5일 이상민·선병렬·송영길·이원영·정봉주·이종걸·한광원 의원 요구)
국회의원(김문수) 징계요구의 건
(3월5일 이상민·선병렬·송영길·이원영·정봉주·이종걸·한광원 의원 요구)
국회의원(박계동) 징계요구의 건
(3월5일 이상민·선병렬·송영길·이원영·정봉주·이종걸·한광원 의원 요구)
국회의원(배일도) 징계요구의 건
(3월5일 이상민·선병렬·송영길·이원영·정봉주·이종걸·한광원 의원 요구)
국회의원(곽성문) 윤리심사요구의 건
(6월16일 이상민·이기우·한병도·정봉주·이원영·이종걸 의원 요구)
국회의원(곽성문) 윤리심사안
(6월17일 유승희·심상정·노회찬·현애자·이영순·이광철·이경숙·전병헌·정청래·장향숙·강기갑·최순영·조승수·권영길·천영세·윤원호·김형주·단병호·김현미·김종률·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10건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審査期間 指定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복기왕 의원 발의)
(2004년10월20일 복기왕 의원 외 150인 발의)
6월30일 소관상임위원회(교육)에 심사기간을 9월16일24시까지로 지정함

○請願 提出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한국증권업협회장 황건호·윤태순 외 4인으로부터 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파주시 상지석리 송전선로 지중화에 관한 청원
(2005년7월4일 경기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685-11 김원경 외 539인으로부터 이재창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5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書面質問書 提出

대북정책(북핵)에 관한 질문서
(6월30일 이승희 의원 제출)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에 관한 질문서
(6월30일 김성조 의원 제출)
노동부 과거사 진상규명 촉구에 관한 질문서
감사원의 노동부소관 5개 기금 감사결과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7월1일 우원식 의원 제출)
환경정책에 관한 질문서
(7월4일 박창달 의원 제출)
전국 국악경연대회 시상대상 선정에 관한 질문서
(7월6일 장영달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 提出

특허사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투기 근절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6월28일 정부 제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월30일 정부 제출)
5 · 18 수사기록 유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외국인 여성인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7월4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提出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5시행계획보고서
(6월30일 정부 제출)
7월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